

구매대행의 특례 제품(제56조 관련)

1.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

분류	품목
가. 전선 및 전원코드	대상 없음
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대상 없음
다.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	대상 없음
라.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	대상 없음
마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	대상 없음
바. 절연변압기	변압기 및 전압조정기
사. 전기기기	1) 삭제 <2026. 4. 1.>
	2)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
	3) 주방용 전열기구
	4) 삭제 <2026. 4. 1.>
	5) 모발관리기
	6) 삭제 <2020. 8. 14.>
	7)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
	8) 전기액체가열기기
	9) 전기담요 및 매트(전기침대는 제외한다)
	10) 전기온수기
	11) 전기 냉장·냉동기기

	12) 삭제 <2026. 4. 1.>
	13) 삭제 <2026. 4. 1.>
	14) 전열기구(전열보드는 제외한다)
	15) 전기마사지기
	16) 냉방기
	17) 삭제 <2020. 8. 14.>
	18)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
	19) 팬, 레인지 후드
	20) 삭제 <2026. 4. 1.>
	21) 가습기
	22) 그 밖에 1)부터 21)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
아. 전동공구	대상 없음
자. 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	대상 없음
차. 정보·통신·사무기기	1) 직류전원장치(휴대전화 전지 충전기는 제외한다)
	2) 그 밖에 1)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
카. 조명기기	안정기내장형램프(안정기내장형LED램프는 제외한다)
타. 전기저장장치 구성품	대상 없음
비고: 이 표 제1호 이외의 별표 3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.	

2.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

분류	품목
가. 화학	대상 없음
나. 생활	물놀이 기구
다. 기계금속	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
라. 섬유	대상 없음
마. 건축	대상 없음
비고: 이 표 제2호 이외의 별표 3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.	

3.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

분류	품목
가. 전선 및 전원코드	대상 없음
나. 전기기기용 스위치	대상 없음
다.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	대상 없음
라.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	대상 없음
마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	대상 없음
바. 절연변압기	1) 고주파웰더(고주파용접기) 2) 전기용접기
사. 전기기기	1) 과일 껍질깎이 2) 전기 용해기 3) 이·미용기기 4)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5) 구강청결기

- 6) 해충퇴치기
- 7) 전기집진기
- 8) 서비스기기
- 9) 전기에어커튼
- 10) 팬코일유닛(fan coil unit)
- 11) 게임기구
- 12)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
- 13) 전기훈증기
- 14) 산소이온발생기
- 15) 전기세척기(초음파세척기는 제외한다)
- 16) 전기차 충전기
- 17) 가정용 전동재봉기
- 18) 사우나기기
- 19)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
- 20)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
- 21) 전기분무기
- 22)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
- 23) 삭제 <2023. 3. 20.>
- 24)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
- 25) 자동판매기
- 26) 전기소독기
- 27) 제습기
- 28) 음식물처리기
- 29)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(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)
- 30) 전기가열기기
- 31) 전기청소기
- 32)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
- 33) 전자레인지(300MHz ~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)
- 34) 전기건조기(손, 발, 의류, 농산물,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)
- 35) 화장실용 전기기기
- 36) 그 밖에 1)부터 35)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

아. 전동공구	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
자. 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	1) 텔레비전수상기 2) 디스크 플레이어 3) 오디오시스템 4) 삭제 <2020. 8. 14.> 5) 삭제 <2021. 5. 3.> 6) 삭제 <2021. 5. 3.> 7) 그 밖에 1)부터 3)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
차. 정보·통신·사무기기	1) 모니터 2) 프린터(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) 3) 프로젝터 4) 문서 세단기 5) 천공기 6) 삭제 <2020. 8. 14.> 7) 복사기(광원의 정격출력이 1.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) 8) 무정전 전원장치(정격출력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) 9) 디지털TV(스마트 TV, IPTV 등을 말한다) 10) 코팅기 11) 노트북컴퓨터(태블릿 PC를 포함한다) 12) 그 밖에 1)부터 11)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
카. 조명기기	1) 백열등기구 2) 방전램프(무전극형광램프는 제외한다) 3) 1)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4) 2)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(PLS방식의 무전극 램프 및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는 제외한다)
타. 전기저장장치 구성품	대상 없음
비고: 이 표 제3호 외의 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.	